

19.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19년 2월 28일
- 제안자 : 박갑상, 강민구, 김병태, 김지만, 박우근, 이태손, 장상수,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9년 3월 18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갑상 의원)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 참고자료 :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전배운)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자에 대한 지원,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규정하였음.

□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및 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안 제4조~안 제6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차량 운전자, 보행자, 교통수단 운영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짐.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7조~제8조)

- 안 제7조는 시장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게 하고, **안 제8조**는 **안 제7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 이는 시장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홍보 및 교육, 보조금 지원 등**
(**안 제9조~제11조, 안 제14조**)

- **안 제9조**는 시장이 교통안전점검 실시와 교통안전 저해요인이 발견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통안전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교육·홍보활동,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교통약자 배려, 민관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지원 목적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기준과 지원방법을 명확히 수립하고 추진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임.
- **안 제13조**는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여 실효(失效)된 경우 교통비를 지

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고령운전자(6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율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 대비 2배 가량 높고 우리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지난해 고령자 면허증 보유율은 9.8%이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17.1% 차지

- 다만, 장롱면허 반납, 면허 재취득, 신청 과다 등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아울러,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참여 영역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 제10조, 안 제14조**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과 포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이 적절하게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면허 재취득 등 신청과다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은?	○ 지원금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장롱면허자의 면허반납이 발생할 경우 장롱면허자 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 장롱면허자의 경우 보험금 납입증명서를 확인하면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히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장롱면허자가 최초 1회 면허를 반납할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